시간제등록생 운영 규정

2014.8.1. 개정
2003.1.1. 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53조에 의거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자(이하 "시간제 등록생"이라 한다)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등록자격)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. 다만, 대학(교)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.

제3조(선발절차 및 방법) ① 시간제 등록생은 모집단위별로 선발하며 모집단위는 수원여자대학교의 연간 편제정원에 의한 학과 및 전공을 의미한다. <개정 2011.11.1., 2014.8.1.>

② 평생교육원은 시간제 등록생을 선발하기 위해 모집단위별로 시간제 등록생 모집 계획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집학과와 모집인원을 모집요강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1.1., 2014.8.1.>

③ 평생교육원은 시간제 등록생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일정, 지원자격, 모집학과 및 선발인원, 전형방법과 등록일정 등의 모집에 관한 사항을 모집요강에 포함하여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공고한다. <개정 2011.11.1., 2014.8.1.>

④ 시간제 등록생을 선발 할 때에는 모집단위별 지원자 수에 따라 해당 모집단위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1.1., 2014.8.1.>

⑤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을 위한 전형자료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 100%를 기준으로 활용하되 모집단위별 지원자가 모집단위의 인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갖춘 인원을 전형 없이 선발할 수 있다.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의 산출은 당해연도 대학의 신입생 정시모집 전형의 학생부 및 수능시험 성적산출 방법에 의한다. <개정 2011.11.1., 2014.8.1.>

⑥ 모집단위에 지원한 시간제 등록생에 관한 전형결과는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고 선발인원과 명단을 공고하고 지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1.1., 2014.8.1.>

제4조(선발인원) ①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총 입학정원의 10% 이내로 하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0%를 초과 할 수 없다. <개정 2011.11.1.>

② 전항의 모집단위별 선발인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1.11.1.>

제5조(등록 및 수강신청) ① 시간제 등록생 전형에 합격한 자는 이수하고자 하는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을 하고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1.1., 2014.8.1.>

② 시간제 등록생이 납부해야 하는 등록금은 당해연도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의 과목별 학점 당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한 학점에 의하여 계산한다. <개정 2011.11.1., 2014.8.1.>

제6조(수업 및 재학연한) 시간제등록생과정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

제7조(교육과정) ① 시간제 등록생이 모집단위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경우에는 모집단위의 당해연도 및 학기의 교육과정을 따른다. <개정 2014.8.1.>

②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경우에는 모집단위의 당해연도 및 학기의 교육과정에 관계없이 전체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개설할 수 있다. 다만,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교원의 양성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은 제외한다. <개정 2014.8.1.>

제8조(이수학점, 학점 당 이수시간 및 수업방법) ① 시간제 등록생이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1.11.1.>

② 시간제등록생의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1.1.>

③ 삭제 <개정 2011.11.1., 2014.8.1.>

제9조(학위수여) ① 시간제 등록생으로 2년제 기준 80학점, 3년제 기준 12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가운데 우리 대학의 동일 학과 및 전공에서 2년제 기준 50학점, 3년제 기준 65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한하여 대학의 장 명의의 해당 학과 및 전공의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1.1., 2014.8.1.>

② 학위종별은 학칙이 정하는바에 의한다. <개정 2011.11.1.>

③ 학위수여 절차 및 요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1.11.1.>

제10조(준용)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학칙과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